

# 일본의 제2차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과 2008년도 수산예산에 대해서

편집실

장래에 걸쳐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산지위의 보호·회복을 향한  
노력과 동시에 수산물의  
생산으로부터 유통·가공에 이르는  
일관된 수산물 공급시스템 안에서  
수산물의 품질의 확보나  
위생 관리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아가는 등, 집축하 체제의 개선을  
도모하여 산지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 I. 일본의 어항정비역사

일본의 어항의 정비는 「文祿年間(1595년경), 이즈(伊豆)(시즈오카현) 이토(伊東)에서는 성주 히코사카 소오사카베(彦坂小刑部)가 방과제 및 그 외의 시설을 축조했다」라는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시작으로, 근대적인 어항건설이 시작된 것은 메이지(明治) 후반부터이다. 정부는 메이지 33년(1900년)에 「원양어업 장려법」을 공포하여 연안어업으로부터 연근해, 원양어업을 장려하여 어획기술, 항해방법의 진보 등과 함께 어선의 대형화, 동력화가 진행되어 연근해, 원양어업도 발달하여 어획량도 급증하게 되었다. 이것에 수반하여 어선의 안전 확보, 어획물 처리의 편리 등이 요구되었고 어항축조의 요구가 급속히 높아져 왔다. 메이지 37, 8년(1904, 5년) 러일전쟁의 결과, 사할린, 연해주 해역에 해외주재 일본인의 출어가 급증하면서부터 해외어업으로의 진출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메이지 41년(1908년) 일본에서 최초의 어항수축에 관한 요구로써 「이즈(伊豆)시키네(式根)섬에서의 어선 피난항 축설보조금 하부」라는 청원서가 제출되었으며 이것을 받아들인 정부는

국고 보조금 2만엔을 지출하였으며 도쿄, 치바, 카나가와, 시즈오카의 각 현에서도 각각 5만엔을 지출하여 메이지 43년(1910년)에 선류장을 축설했다. 이것이 어항수축에 대한 국고 조성의 시작이다.

이후 「어항법」에 근거한 최초의 어항정비계획은 법률 공포와 함께 책정작업에 착수, 쇼와 26년(1951년) 5월 제10회 국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것이 제1차 어항정비계획으로 총사업비 544억엔으로 450항을 정비하였다.

이래 아래와 같이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이 발족되었고, 이후 새로이 제정된 「어항어장정비법」에 근거

하여 헤세이 14년(2002년)도부터 제1차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이 착수되었고 작년 헤세이 19년(2007년)도부터 제2차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이 착수되었다.

## II. 제2차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

어항어장정비법(쇼와 25년(1950년) 법률 제137호)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헤세이 19년(2007년)도부터 헤세이 23년(2011년)도까지의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어항어장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 생각

세계의 수산물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인구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수요량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산자원의 반 이상이 4분의 1 정도 과잉 어획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 우리나라(일본)에 대해서 봐도 여전히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톱 클래스에 있는 가운데 백화현상 등에 의한 조장·간식의 감소 등이 눈에 띄며, 수산자원의 대부분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있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수산물을 안정되게 공급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과제이며, 어장에 있어서도 생산의 장뿐만 아니라 수산생물의 생육의 장으로서의 기능강화·충실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게다가 한정된 수산물을 신선하고 양질인 상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수입수산물과 달리 소량 다품종을 특징으로 하는 국내 수산물에 있어 소비자의 요구의 변화에 대응한 집중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서 장래에 걸쳐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장기 계획	계획기간	계 획 과 제	실시항수	총사업비	계산안 충족률
제1차	1951년~	전후부흥	수축 450항	121억엔	
제2차	1955년~	전후부흥	수축 604항	393억엔	
제3차	1963년~ 1970년 (8년)	1. 원양어업근거지의 정비 2. 근해어업근거지의 정비 3. 연안어업근거지의 정비 4. 피난항의 정비	수축 380항 개수 약450항	922억엔	1970년 30% 1960년 16.2%
제4차	1969년~ 1973년 (5년)	1. 국민식량으로서 수산물 생산 확보 2. 어획물의 유통개선 3. 지역사회 기반강화	수축 370항 개수 약550항	1,610억엔	1973년 48.4% 1966년 21.8%
제5차	1973년~ 1977년 (5년)	1. 유통체계의 강화 2. 생산활동의 원활화 3. 밝은 어촌의 건설	수축 420항 개수 약665항	3,408억엔	1977년 50% 1969년 24%
제6차	1977년~ 1982년 (6년)	1. 국민식량으로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2. 근대적이고 매력있는 수산업의 확립 3.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	수축 450항 개수 약820항	9,944억엔	1982년 50% 1974년 32%
제7차	1982년~ 1987년 (6년)	1.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2. 매력있는 어업의 확립 3. 어촌사회의 기반정비	수축 480항 개수 약870항	1조 4,362억엔	1987년 50% 1979년 34%
제8차	1988년~ 1993년 (6년)	1. 일본 주변수역의 효과적 이용 2.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유통가공체제의 확립 3. 활력있는 어촌의 형성	수축 490항 개수 약920항	1조 9,618억엔	1993년 50% 1985년 38%
제9차	1994년~ 2001년 (8년)	1. 일본 주변수역의 고도이용 2. 소비자 요구와 일치되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3. 만남으로서의 어항공간창출 4. 쾌적하고 활력 있는 어항어촌 형성 5. 아름다운 해변환경보전과 창조	수축 480항 개수 약720항	3조 1,949억엔	2001년 58% 1991년 48%
제1차 어항어장정비장기 계획	2002년~ 2006년 (5년)	1.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양질의 수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제정비 2.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이 되는 어장 등의 적극적인 보전, 창조 3. 수산업진흥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생활환경형성을 목표로 한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	※ 현 정비계획은 양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위생관리, 취로환경개선 등 질적인 관점으로 전환, 상기 데이터를 취합하지 않음		

산물을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산 자원의 보호·회복을 향한 노력과 동시에 수산물의 생산으로부터 유통·가공에 이르는 일관된 수산물 공급 시스템 안에서 수산물의 품질 확보나 위생 관리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아가는 등, 집축하 체제의 개선을 도모하여 산지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물의 안정된 공급이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기반이 되며, 어업취업자 등의 생활의 장인 어촌에 있어서 대규모 지진이나 해일의 내습 등이 염려되는바, 방재력 강화에 의한 안전성의 확보와 함께 활력을 유지·증대시켜 가기 위해서 생활·노동환경의 개선을 더욱더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점을 근거로 하여 향후 5년간에 중점적으로 임해야 할 과제를 아래의 3 과제로 좁혀 어항어장에 어촌을 더불어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비의 추진에 있어서는 수산기본계획과의 긴밀한 제휴아래, 어선어업의 구조개혁이나 산지 시장의 통합 등에 의한 시장기능의 강화대책 등과도 보조를 맞추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 환경과의 조화나 수산업·어촌이 가지는 수산물 공급의 기능 이외의 다면적인 기능이 발휘되도록 배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

- (1) 우리나라(일본) 주변수역에 있어서 수산자원의 생산력향상
- (2)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강력한 산지만들기의 추진
- (3) 수산물의 안정적인 제공 등을 지지하는 안전하고 안심한 어촌의 형성

**2. 실시목표 및 사업량**

수산 기본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수산물의 안정공급 및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앞에서 제시하는 중점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

적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약 5년 후를 목표로 성과를 발현시키는 것으로 한다.

아울러 계획기간에 있어서 어항어장정비사업의 사업량은 정비하는 대상을 중점화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리나라(일본) 주변수역에 있어서 수산자원의 생산력 향상**

**1) 실시목표**

자원량이 적은 어종을 중심으로 만들어 기르는 어업이나 자원관리와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해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있는 어장정비에 힘을 기울여 수산생물의 성장단계에 따른 생육환경 만들기를 도모한다. 이 때 모니터링의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자연환경이나 생물의 상호작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로 하는 주된 성과**

수산기본계획에 있어서 자급률 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장재생 및 신규어장정비에 의해 약 14.5만 톤의 수산물(약 230만명 정도의 국민소비를 조달하는 수산물)을 새롭게 제공한다.

**3) 사업량**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있어서 수산자원의 생산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가. 약 7만 5,000ha의 어초나 중앙식장을 정비한다.
- 나. 약 25만ha의 어장회복에 이바지하는 퇴적물 제거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약 5,000ha의 조장·간석의 조성에 상당하는 수산자원의 생육환경을 새롭게 보전·창조한다.

**(2) 국제 경쟁력의 강화와 강력한 산지만들기의 추진**

**1) 실시목표**

수산물의 생산으로부터 양륙, 유통·가공까지 일관된 공급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생산코스트의 감축이나 선도보관유지대책, 위생관리대책에 중점적으로 정비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산지만들기의 실현을 도모한다. 아울러 재해발생 후에 있어서도 수산물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반정비에 힘을 기울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산지만들기의 실현을 도모한다.

2) 목표로 하는 주된 성과

수산물의 유통거점이 되는 어항에서 취급되는 수산물 가운데 어항어장정비사업을 통한 고도의 위생관리 대책 아래 출시되는 수산물의 비율을 23%(2004년도)에서 약 50%로 향상시킨다.

수산물 유통거점이 되는 어항 가운데 산지시장 전면의 양륙용 안벽이 내진화된 어항의 비율을 9%(2004년도)에서 40%로 향상시킨다.

(주) 「수산물 유통 거점이 되는 어항」이란, 주요한 수산물의 산지시장을 개설하고 있는 어항을 말한다.

3) 사업량

산지시장의 통폐합 등 수산물 유통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산물의 안정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가. 수산물 유통의 거점이 되는 지구에 있어서 양륙시 처리수의 청정해수 도입 등에 의한 위생관리의 강화나 어항시설의 내진화 등의 추진을 도모하는 지구를 약 150지구 정비한다.

나. 핵심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조업준비활동 등을 하는 지구에 있어 항내작업시 안전성의 확보, 양륙작업시간의 손실 해소, 축양식 수면의 정비 등 수산물의 보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도의 보관유지를 도모하는 지구를 약 485지구 정비한다.

(3) 수산물의 안정적인 제공 등을 지지하는 안전하고 안심한 어촌의 형성

1) 실시목표

어업취락 배수시설이나 자연재해시에 피난지가 되는 녹지·광장시설 등의 정비와 일체성을 고려한 어항

어장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위생관리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초가 되는 어항·어장의 수역환경과 어촌의 방재력의 향상을 포함한 생활·노동환경의 개선을 도모한다.

2) 목표로 하는 주된 성과

어항·어장의 수역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어업취락 배수처리를 실시하고 있는 어촌 처리인구비율을 35%(2004년도)에서 약 60%로 향상시킨다.

지진방재대책 강화지역 등에 입지하는 어촌 가운데 어항어장정비사업에 의해 지진이나 해일에 대한 방재기능 강화를 강구할 수 있는 어촌 인구비율을 21%(2004년도)에서 약 30%로 향상시킨다.

(주 1) 「어업취락 배수처리를 실시하고 있는 어촌 처리인구비율」이란, 오수처리 시설의 정비에 관한 도도부현의 구상에 있어 어업 취락배수시설의 정비대상인구에 대해서 동 시설을 이용 가능한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주 2) 「지진이나 해일에 대한 방재기능의 강화를 강구할 수 있는 어촌 인구비율」이란, 해당 어촌에 있어서 필요한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1995년 법률 제 111호)에 근거하는 긴급수송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항 시설 등이 확보된 어촌의 인구비율을 말한다.

3) 사업량

어항어장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구를 약 280지구를 정비한다.

3. 유의사항

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이하의 점에 유의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1) 시책제휴 강화에 의한 효과를 상승적으로 높이는 대책의 추진

1) 생산으로부터 양륙, 가공·유통, 판매의 각 단계에 이르는 수산 관련시책과의 제휴의 추진

2) 사회자본 정비중점계획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계획 등 다른 공공사업 계획사업과의 제휴 추진

- (2) 나라와 지방의 역할에 맞는 계획의 추진
- (3)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집중화·중점화 추진
- (4) 기존 스톡의 유효활용과 갭신 코스트 감축대책의 추진
- (5)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향한 계획의 추진
- (6) 민간 자금·능력의 활용
- (7) 사업 평가의 엄정한 운용과 투명성의 확보
- (8)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코스트 감축의 적절한 실시

덧붙여 향후의 경제재정사정, 각 시책의 진척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어항어장정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Ⅲ. 일본의 2008년도 수산기반 정비사업에 산 개산결정의 개요

수산자원의 증식추진과 생식환경의 보전·국제화에 대응하는 유통거점의 정비·안전하고 활력있는 어촌의 형성

~ 중점적이며 전략적인 수산기반정비에 의해 수산시책을 착실하게 추진 ~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국가의 직할어장조성과 자원회복계획과의 제휴 등에 의한 증식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또한 위생관리기능의 강화에 의한 국제화의 대응이나 기존 스톡의 갭신 코스트의 감축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방재관련시설의 정비와 탄력적인 계획제도의 도입에 의한 어촌 만들기를 추진

#### 1. 개산 결정액

133,937백만엔(전년대비 : 0.929)

#### 2. 수산기반정비사업 예산내시의 포인트

##### (1) 수산자원의 증식 추진과 생식 환경의 보전

○ 프런티어어장 정비사업(공공·계속) : 400(127)백만엔

일본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 국가의 직할정비에 의한 어장조성의 본격적인 실시

○ 자원회복지원기반 정비사업(공공·확충) :

84,036(93,318)백만엔

자원회복계획 등의 대상해역에 있어 증식장 등의 정비와 겸하여 해조류의 파종·이식이나 모니터링 등의 소프트사업을 일괄적·종합적으로 계획·실시

○ 수산기반정비 실증조사(공공·확충) :

708(726)백만엔

우리나라(일본) 유수의 폐쇄성해역으로 특이한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리아케해(有明海)에 있어 아리아케해의 환경개선과 패류자원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실증 시험을 실시

○ 기타대책 긴급정비사업(공공·계속) :

84,036(93,318)백만엔

(중점시책추진범위를 포함한다)

백화현상피해가 현저한 어장에 있어 조장·간석의 조성과 더불어 패류식해방제 펜스 설치 등의 식해생물대책, 해조류의 모니터링 등을 실시

○ 어장 보전의 숲만들기 사업(공공·계속) :

10,000(10,000)백만엔

어장환경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폐쇄적인 만, 굴착지 등의 배후지 삼림·하천 유역·해안 등에 있어 임야청과 제휴하여 영양 염류의 공급, 탁수의 완화 등에 효과적인 숲만들기를 실시

##### (2) 국제화에 대응한 유통 거점의 정비

○ 수산물 유통기능고도화 대책사업(공공·신규) :

98,753(-)백만엔

(중점시책추진범위를 포함한다)

산지시장의 통폐합 등 수산물유통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산물의 집출하 거점이 되는 어항이나 적극적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어항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의 효율화, 품질·위생관리의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시설 정비를 추진

- 수산기반 스톡 매니지먼트사업(공공·신규) :

1,200(-)백만엔

증가하는 기존스톡의 갱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의 기능진단, 기능보전 계획의 책정, 보전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의 장기수명화와 갱신 코스트의 평준화·감축을 도모한다.

**(3) 안전하고 활력 있는 어촌의 형성**

- 어업취락 환경정비사업(공공·확충) :

6,085(6,274)백만엔

어촌의 방재력 향상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지역의 공지를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녹지·광장시설(피난지)을 정비함으로써 지진방재대책을 추진

- 어촌재생교부금(공공·확충) : 7,746(8,505)백만엔

(중점시책추진범위를 포함한다)

정세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계획의 재검토가 가능한 구조를 도입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비를 추진

**(참고) 공공예산활용에 의한 시프트시책의 확충**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 및 「2008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를 근거로 하여 공공재원의 일부를 비공공 사업에 활용

- 지구온난화에 의한 연안어장환경의 영향평가·적응책 검토조사(신규) : 98백만엔

연안·내항의 모텔해역에 있어 해수중의 온도변화 등을 파악·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양식업이나 기근자원 등에 영향평가방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유효한 대응책을 검토

- 양식 흑다랑어 안정공급 추진사업(신규) :

247백만엔

연근해 등의 미이용해역에서 흑다랑어 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가두리나 인공사료의 개발 및 선망으로 어획되는 소형어를 양식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운반기술 등을 개발

- 어업경영 안정대책사업(신규) : 5,206백만엔

경영개선에 임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현행 어업공제제도의 경영안정기능에 추가한 형태로 수입변동에 의한 어업경영에 영향을 완화시키는 새로운 경영 안정대책을 도입 

- 2008년도 수산관계공공사업예산 개요

(단위 : 백만엔)

사	항	2007년	2008년	전년대비
수산기반정비		144,148	133,937	0.929
수산물 공급기반정비		108,167	99,953	0.924
직할특정어항어장정비사업		18,102	18,375	1.015
지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38,204	31,660	0.829
광역수산물 공급기반 정비사업		51,861	48,718	0.939
광역어항정비사업		42,119	39,184	0.930
광역어장정비사업		9,742	9,534	0.979
수산기반 스톡 매니지먼트사업(신규)		-	1,200	신규
수산자원환경정비		13,363	13,758	1.030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		13,253	13,658	1.031
어장환경보전창조사업		3,253	3,658	1.125
어장보전의 숲 만들기사업		10,000	10,000	1.000
어항수역환경보전대책사업		110	100	0.909
어촌종합정비		15,894	14,580	0.917
어항환경정비통합사업		1,115	749	0.672
어촌만들기 종합정비사업		14,779	13,831	0.936
어업진략 환경정비사업		6,274	6,085	0.970
어촌재생교부금		8,505	7,746	0.911
수산기반 정비조사(직할·보조)		796	771	0.969
수산기반 정비보조출차액 등		5,143	4,234	0.823
어항관련도로정비(관련도로 보조출차액 포함)		786	641	0.816
어항해안		10,532	10,149	0.964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7,702	7,491	0.973
파랑·고조위기관리대책응급사업		1,245	1,406	1.129
해안환경정비사업		1,178	846	0.718
조사비 등		407	406	0.998
수산기반·어항해안 계		154,680	144,086	0.932
재해복구		1,113	1,113	1.000
수산공공사업 계			145,199	0.932